

## 업 무 협 조

믿을주는 소비자금융! 안심되는 소비자금융!

#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

(100-070)서울시 중구 소월로10, 13층(남대문로5가, 단암빌딩) / TEL 02)3487-5800/ FAX 02)6670-9650/ www.clfa.or.kr

문서번호 : 기획업무-69  
발신일자 : 2017. 12. 22.  
수 신 : 수신처 참조  
참 조 :  
제 목 :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

1.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대부업법 § 12⑨에 따라 모든 대부업자(채권매입추심업자 포함) 및 대부중개업자는 업무보고서를 반기별(6월 30일, 12월 31일)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 다음 달 말일(7월 31일, 1월 31일)까지 각 등록기관(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)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고(동법 §21①xii),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검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.

대부업법 제 12조(검사등) ⑨ 대부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·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2. 제 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거짓으로 작성하거나,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

문의 : 기획조사부 최기훈 주임 (02-6710-0816)

(\* 작성 및 제출 방법은 금융감독원 및 각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.)

한국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장



수신처 : 전 회원사 대표이사